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이강국
판사

공적 인물은 스스로 그것을 구한 이상 자기에 관한 기사의 공표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사회적 지위가 공적인 것이 된 이상 그것을 알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특권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보도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랑을 공중에 알리기 위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인물의 사생활권이 부정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건에 개입되는 범위 안에서만 프라이버시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생활의 범위 밖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I. 서 설

1. 우리 헌법 제 20 조 제 1 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제 2 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에 대한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의 자유성과 공개성 및 그 결과로서의 소수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시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경향의 자유를 의미함에 반하여 신문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적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치의 주관적 권리를 의미함과 아울러 타면에 있어서는 여론의 형성에의 참고와 같은 민주적 정치질서의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문의 공적 의무(öffentliche Aufgabe)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현대와 같은 다원적 사회에 있어서 신문의 경제적 기업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공적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2. 사람은 누구나 그 나름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명예를 손상받은 경우에는 형사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의 이론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적 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생활(Das Privatleben)의 자유로운 형성과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상으로는 주거침입신서개피죄 등에 의하여, 민사상으로는 역시 불법행위의 이론에 의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보통이다. 영미법과 같이 불법행위를 유형적으로 인정하는 법제 하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권(privacy)은 독립의 불법행위로서 구성되는데 반하여 대륙법계와 같이 권리침해나 위법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을 삼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권의 침해는 이를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격권의 침해로서 파악되어 왔다.

3.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인격적속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제 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익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대륙법계인 서독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씨명, 생명 등의 개별적 인격권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였고 그러한 개별적 인격권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인격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정된 본(Bonn) 기본법 하에서는 인격을 최고가치로서 규정하게 되면서 (동법 제 1조 제 1항 및 제 2조 1항), 그 후부터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로서의 인격권의 개념에 관하여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왔고 학설, 판례 등에 의하여 점차 그 존재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II. 공적 인물

1.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격권을,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되어야 할 이익의 총체라고 파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문을 비롯한 매스컴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지위의 인물인가에 의하여 침해 또는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인격권의 침해 또는 피해정도에 차이가 나는 피해자의 양태를 공공인과 유명인, 통상인, 범죄혐의자나 피고, 소년, 사자 및 유족, 집단 및 단체 등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나 아니냐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편 미국의 판례법은 사상표현의 자유 또는 신문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가 상충되는 경우에 보도자에 대하여 2개의 면책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하나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의 법리로서, 일정의 보도 또는 그것에 준하는 활동이 그 성질상 민주제도의 근간인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경우 사생활권의 침해는 면책이 된다고 하는 법리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뉴스는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며, 보도적 가치는 대체로 프라이버시의 가치보다 우월하지만 교육적, 계몽적 가치는 보도적 가치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전자를 침해한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일반적으로 면책되지만 후자를 침해한 경우에는 뉴스의 보도와 프라이버시의 이익을 비교 교양하여야 하되, 다만 오락적 가치만을 가진 보도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면책사유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이론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공적 인물의 이론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공적 인물」이라 함은 그의 재능, 명성, 생활양식에 의하여, 또는 일반인에게 그 행위, 사건과 인격에 관한 정당한 관심을 주는 직업을 택함으로써 「공적 인사」(public personage)가 된 자, 즉 명사를 가리킨다. 이러한 공적인물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유명인이 된 자 예를 들면 정치인, 관료, 배우,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비자발적으로 공적 인물이 된 자, 예를 들면 범인, 그 가족, 피해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공적 인물에는 상급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을 포함한 공무원, 발명가, 배우 등을 포함한 문화인, 교육자 그리고 대중의 우상으로 취급되는 운동선수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공적 인물의 법리의 법률상 효과는 사생활권의 부정이며 보도자에 대하여 면책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직업, 생활태도 기타에 있어서 자기를 공중에 내세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사생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적 인물은 스스로 그것을 구한 이상 자기에 관한 기사의 공표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사회적 지위가 공적인 것이 된 이상 그것을 알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특권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보도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공중에 알리기 위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인물의 사생활권이 부정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건에 개입되는 범위 안에서만 프라이버시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생활의 범위 밖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일본최고재판소는 소화 41년(1966년) 6월 23일 판결에서 주목할만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원래 언론, 표현 등의 자유의 보장과 프라이버시의 보장과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편이 우월하다는 원칙은 없고 언론, 표현 등은 타의 법익 즉 명예, 신용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고 하면서 공적 인물의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공공의 질서, 이해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 저명인사가 관계되는 경우에는 동인의 공적 성격으로부터 합리적인 한계 내에서만 사생활의 측면까지도 보도, 논평 될 수 있을 뿐 무차별, 무제한하게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이에 덧붙여 『공인 또는 공직의 후보자에 관하여는 그 공적 존재, 활동에 부수된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범위 안에서는 그의 사생활을 보도, 논평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개가 허용되는 목적에 비추어 스스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무차별, 무제한한 공개가 정당화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여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생활의 범위 밖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보도자의 면책사항으로서의 공적인물의 법리는 또다른 면책 사유인 공공의 이익의 법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판결에서도 양자의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즉 공공의 이익에 의한 법리에 의하여 보도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에서 그 대상이 공공의 인물이라는 측면으로부터 면책을 인정하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위 2개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법원이 보도자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는 공적인 것인가, 보도자의 행위는 그것 자체 사생활에의

부당한 침입인가, 피해자의 행동양식이나 생활태도는 윤리적인가, 그와 관련된 피고의 행위는 비윤리적인가, 그러한 윤리성과 비윤리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등의 제반 요소를 비교교량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III.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와 인격권의 보호범위

이 하에서는 공적 인물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보도와 인격권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일본에서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정치가

일본에서는 정치가로서는 대개 ① 총리대신과 대신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③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 등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따라 피해의 양태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총리대신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한다. 국무대신에 관하여도 재판문제가 된 경우는 없지만 고소가 제기된 경우는 있다고 한다. 즉 정경저널이라고 하는 정계정보지가 「좌등내각 베일하의 말기적 증상」이라든가 또는 「최저내각의 이름을 높인 불명예대신일람」이라는 등의 제목이 붙은 특집기사에서 대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전중 행정관리청장관, 등지 운수대신 등이 위 잡지의 사장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은 그 후 정경저널 사장의 공개사과를 받고 고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본안판결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는 정치가나 국가 조직상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의 발동을 촉구하는 고소의 수단을 선택하였다는 점은 표현의 자유에 권력의 개입을 초래할 위험성이 다대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에 관하여는 몇 개의 판결례가 있다. 광도시의 지방의회가 시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마약을 횡령한 시의원의 비행을 알고 있는 청년에게 압력을 넣고 심지어는 권총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기사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광도고등재판소는 신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범죄성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보도기관은 그것을 공중의 비판에 붙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한편 奈良현에서 자치경찰폐지론에서 존치론으로 견해를 바꾼 한쪽 팔이 없는 지방의원을 비판하는 신문기사에서, 『육체적으로 외팔이는 신체적으로도 외팔이인가?』 하는 보도에 대하여 大阪고등재판소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불구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무원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것은 형법 제 230 조의 2 제 2 항 제정의 정신을 역설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고, 최고재판소도 공무와 하등 관계가 없는 사실을 집필, 게재한 것은 신체적 불구자인 피해자를 공연히 비방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大阪고등재판소의 결론을 지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선에 의한 공무원후보자의 경우에 관하여는

「살인전과」 사건이라고 불리워지는 케이스가 있다. 이 사건은 소화 30년(1955년) 3월 3일의 신문에 게재된 『2월 선거의 내막』이라는 기사 가운데에서 중의원 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A에 관하여 『A는 소화 17년 당시 호텔의 지배인이었을 당시 그 호텔의 소유자가 급사하자 그 호텔의 경영을 둘러싸고 시비를 하다가 소유자의 처를 살해하여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면에 의하여 교도소를 출소하여 작년 선거에서 겨우 피선거권을 얻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인 A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무관한 과거의 사사로운 전과를 공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동경지방법판소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공무원의 선정, 파면은 국민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권자(선거권자)인 국민은 공무원 또는 그 후보자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것이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판단에 관계가 있는 한,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사사로운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진실인 한 그 사실의 공표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 한계는 그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과 상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에 관하여는 타의 일반공무원과 달리 그 적부의 판단에는 전인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하면서 A의 살인전과는 의원후보자의 적부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내용이 진실인 한, 그러한 사실의 공표는 허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합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동경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판결은 이미 위에서 본 외팔이 사건과는 다른 의미에서 정치가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여진다. 원래 전과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의 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중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의 공개가 허용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정치가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보장이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지만 국민이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의 진부를 판단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문제에 관하여는 공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시하고 있음도 역시 주목이 되는 점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동경지방법판소가 소화 39년(1964년) 9월 28일에 선고한 판결에서도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법적 보장 내지는 권리」라고 하면서 『……특히 사생활의 공개가 공인 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사회적 정당성때문에 공개되어야 할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본건과 같이 도지사 선거로부터 1년여를 경과하여 원고가 이제는 공직의 후보자도 아니고 공직후보자가 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예적 창작의욕에 의하여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이 아닌 것으로 용인되는 범위는 위와 같은 예의 경우보다 훨씬 좁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위는 세간주지의 사실 또는 과거의 공적 활동으로부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 또는 일반인의 감수성을 가진다면 피해의식을 가질 수 없는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에서 본 판결과 그 본질적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본에서의 정치가에 관한 보도에 관하여는 2가지의 점이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총리대신, 국무대신, 국회의원에 관하여는 명예침해의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신문이 중앙정계의 인물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심을 하면서도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우선 지적되고 있으며, 취재기자의 자질상의 차이 또는 중앙정계에서는 법적 수만에 호소하기 전에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함에 반하여 지방정계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이 강하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는 총리대신의 명예권이 다른 공공인에 비하여 특별히 취급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일본에서의 총리대신은 국가원수도 아니고 대통령책임제 하의 대통령의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총리대신의 지위는 공공성은 강하지만 상징성은 약하기 때문에 그의 명예권의 보호정도에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총리는 국정의 대표자이며 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민주제도에 합치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례의 집적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직업, 사회적 지위에 의한 공공인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공무원, 법관, 검사, 경찰관, 교육자, 성직자, 변호사, 의사, 문화인, 신문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경우도 있지만 통상인과는 달리 그 사회적 지위나 직업상으로 보아 통상인과는 다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공공 인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범위에 속하는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권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무원」에 관하여는 경도지방법판기가 소화 31년(1956년) 9월 7일에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경도부 임무 출장소장이 토건업자로부터 수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시멘트를 처분한 자금으로 집을 매입하고, 특히 출입업자로부터 자재를 기부받아 그 자재로서 그 매입한 집을 증축하였다는 취지의 신문기사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위 임무 출장소장이 부정한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였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지마는 그 주택의 증축 시에 출입업자들로부터 자재의 상당부분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은 사실로서 인정된다고 하여 기사의 일부분에 관하여서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50만엔의 위자료 청구 중 3만엔 만을 인용하고 사죄광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재판관」에 관하여는 신문의 표제에 관하여 문제가 된 천엽지방법판소의 판결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경지방법판소의 다음과 같은 설시이다.

『형법 제 230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의 취지는, 요컨대 신헌법 하에 있어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일반인들에 비하매 높은 인격과 식견 능력과 그것에 수반되는 엄정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감내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흠이 없도록 부단한 반성과 연마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공무원의 명예감정이 훼손된 경우에도 적시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있는 이상은, 그 사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구체적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또는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불문하고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검찰관」에 관하여는 사례가 없으나 「경찰관」에 관하여는 전형사」사의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66년 6월 3일자 요미우리 신문사회면에 『빌딩건설로 사기, 전 열사 등 2명 서류 송청』이라는 제목으로 전직형사 2인이 동경지의 동소관경내에 고층건물을 세운다고 사기하여 모두 1,100 만엔의 약속어음을 발행케 하여 사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에서 동경지방법재판기(1968. 4. 8 판결)는 『명예훼손의 성부는 통상인이 그 기사를 읽고 어떠한 인상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본건기사는 「조사에 의하면」으로 하여 원고의 사문서위조, 사기사실이 적시되었으며, 경찰서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하며 발표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기사전체로 보아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목과 함께 원고가 진실로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은 범죄의 혐의에 관한 것이므로 이것이 신문기사로서 보도됨에 따라 그 범인으로 지적된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저하시켜 명예를 해친 것은 명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교육자」의 경우에 관하여는 교육자가 공무원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자주 인용되는 예는 「T 박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저명한 학자인 T 박사의 사생활을 매일신문이 보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T 박사에게 애정의 향의, 자살을 기도한 미망인』이라는 표제에서, T 박사가 전쟁미망인 K와 혼인 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른 부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K와 결별하려고 하자 K가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길다는 취지로 보도된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T는 그 기사는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예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T의 사건을 폭로하며 세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므로 공익 목적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매일신문은 본건 사실은 전후의 성도덕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대학교수라고 하는 사회적지위를 가진 사람과 전쟁 미망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건기사는 자살미수사건과 그 동기를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반사회성을 가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 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경지방법재판소는 『그와 같이 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한,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될 수 있거나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거나, 또한 그 동기가 어디에 있건 간에 진실이 아닌 기사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하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기사자체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사생활의 보도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도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그 견해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나 본건은 순수한 사생활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사회성을 가지고 보도하였거나 또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주목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교육자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는 대학교수의 입시부정 행위를 추측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한 대판고등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H가 입학시험을 고의로 누설한 것은 아닌 하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본건기사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경우에 H의 명예훼손 정도는 심각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본건 기사를 집필할 때에는 위와 같은 의혹의 합리적 근거의 유무에 관하여 신중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H가 의혹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신문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너무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 「변호사」에 관하여 유명한 사건으로는 A 변호사의 법정기술에 관하여 당시 구주관구경찰국장이 소피스트적이라고 평한 것을 둘러싼 사건이 있으며 신문과 변호사 간에 문제가 된 경우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 종합잡지에 기고한 논문에 관한 사건이 있었는 바, 제 1 심은 위자료로서 3 만 엔과 사죄광고를 명하였으나, 2 심인 동경고등재판소는 1 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의사」에 관하여는 『대판의 무모한 정형치료의 교』라는 표제의 기사에 관한 大阪지방법재판소의 소화 42 년(1967 년) 3 월 31 일의 판결이 참고가 된다. 이 사건은 정형외과 의사가 그 당시까지는 의학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스테론 90 에 의한 베타선의 조사치료법을 행하였고, 그 결과 환자 수명이 방사선으로 인한 피부염의 증상을 보였고 치료불능의 상처를 남겼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를 기재하면서 그 표제로서 『수십 명이 불치의 상적』, 『大阪에서 무모의 정형치료화』 등으로 표제를 붙이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대체로 보아 본건기사는 사실에 합치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전체로서도 표현상의 윤색 이상으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문측의 진실성의 증명이 인정된 판결중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본 공적인물 이외의 유명인으로서는 보통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등의 연예인과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운동선수 등은 현대인의 우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때문에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스컴에 의하여 인격권이나 사생활권이 침해받기 쉬운 입장에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신문에 의한 연예인의 인격권침해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로 까지 확대된 케이스는 아직은 없으나 주간지에 의하여 문제가 된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한다. 주간지에 의한 연예인의 인격권침해사건에 대하여 동경고등재판소는 소화 44 년(1969 년) 12 월 25 일 판결에서 『본건기사는 이 사건의 성질상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와 같이 법률상의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판단을 하면서 『원고가 혼전에 동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부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판결의 1 심 법원인 동경지방법재판소는 소화 43 년(1968 년) 11 월 25 일 판결 이 사건에 관한

판결문에서 『최근의 대중적인 주간지가 연예인의 연애, 결혼, 이혼 등의 기사를 즐겨 게재하면서 사생활의 스캔들을 발굴, 취재하려는 경쟁은 너무 심한 상태』라고 지적한 점은 경청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은 매스컴 특히 주간지 등 대중지로 하여금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동경지방검찰청 역시 『鰐淵晴子 이혼소동의 검은 배경』이라는 기사의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당사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하고 주간명성의 부 편집장을 그 수사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주간지 등 매스컴의 자제가 절실히 요망되지만 과거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 공권력이 개입한 점은 문제가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연예인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명을 노리는 자도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생활권의 포기」라는 이론에 의하여 보도자를 면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IV. 결 론

이상에 서 본 바와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일본의 판결례를 검토해 보면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하는 직업인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보호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적 인물에 대한 신뢰적 평가, 직업적 평가 등으로부터 오히려 그러한 인물들의 사생활권의 범위는 통상인에 비하여 훨씬 좁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명예권에 대하여도 명예에 대하여 특히 민감한 면이 있음과 동시에 명예의 훼손에 대하여는 보호되어야 하는 면의 양면성을 가지는 점도 통상인과 다른점이다. 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보도기관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는가, 원고는 어느 범위에서 공적 인물로 취급될 수 있는가, 그 사회적 지위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부분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는가, 피고의 보도 행위는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원고의 사회적 생활태도는 윤리적인가, 보도가 된 문제와 관련된 피고의 행위는 비윤리성을 현저히 수반하는가 하는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고 비교 교양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적 인물의 사생활권의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이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독 괴팅겐 대학 수료
- 197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